

의안번호	2201575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5.
추 계 번호	24F18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5조의3제1항 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－ 공제내용: (취득세) 사업전환계획 승인 3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50% 공제 (재산세) 5년간 50% 공제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5조의3제1항 (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위기지역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, 전환한 사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75조의3제1항)
 - 개정안은 지역 및 업종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로 연장
 - － 감면내용: (취득세) 중소기업이 감면 적용기한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일 3년 이내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

(재산세) 중소기업이 감면 적용기한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5년간 재산세 50% 감면

※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%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음

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- 위기지역은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의미

[표 1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위기지역

(단위: %)

	근거법	내용
고용조정지역	「고용정책 기본법」	－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
고용재난지역	「고용정책 기본법」	－ 대규모 기업 도산 및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	－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
인구감소지역	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	－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

- 감면대상 업종은 동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광업, 제조업 등 12개 업종을 의미

－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정보통신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 관리·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, 수도·하수 및 폐기물 처리·원료 재생업, 물류산업, 학원 등 운영사업, 전시산업, 관광숙박업 등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향후 위기지역의 지정 및 운용, 감면대상인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추이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동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으며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0~2022년간 총 62.9만원 수준

[표 2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3제1항의 감면실적 추이

(단위: 만원)

	2020	2021	2022	총액	연평균
감면실적(재산세)	34.2	14.0	14.7	62.9	21.0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 향후 위기지역 지정 및 운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, 2024년 7월 기준 현재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하여 운용중인 지역이 없으며, 향후 위기지역의 지정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음
 - 동 조항의 위기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고성, 삼척 등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용 중이나 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4년 7월 현재 지정되어 운용중인 지역이 없음
 - 향후 지역별 고용 및 산업 위기 발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위기지역의 지정 여부 및 운용기간 등을 추정할 수 없음

[표 3] 위기지역 지정 및 운용 현황

구분	지역별 지정 및 운용기간
고용위기지역	경남 거제시('18.4.~'24.6.) 전남 목포시·영암군('18.5.~'22.12.) 울산 동구, 전북 군산시, 경남 창원시 진해구·통영시·고성군('18.4.~'22.12.)
고용재난지역	과거 지정 및 운용 사례 없음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울산동구, 전남목포시·영암군, 경남거제시·창원시진해구·통영시·고성군('18.5.~'23.5.) 전북 군산('18.4.~'23.4.)
인구감소지역	부산 동구·서구·영도구, 대구 남구·서구·군위군, 인천 강화군·옹진군, 경기 가평군·연천군, 강원 고성군·삼척시·양구군·양양군·영월군·정선군·철원군·태백시·평창군·홍천군·화천군·횡성군, 충북 괴산군·단양군·보은군·영동군·옥천군·제천시, 충남 공주시·금산군·논산시·보령시·부여군·서천군·예산군·청양군·태안군, 전북 고창군·김제시·남원시·무주군·부안군·순창군·임실군·장수군·정읍시·진안군, 전남 강진군·고흥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보성군·신안군·영광군·영암군·완도군·장성군·장흥군·진도군·함평군·해남군·화순군·경북 고령군·문경시·봉화군·상주시·성주군·안동시·영덕군·영양군·영주시·영천시·울릉군·울진군·의성군·청도군·청송군, 경남 거창군·고성군·남해군·밀양시·산청군·의령군·창녕군·하동군·함안군·함양군·합천군('21.10.~)

자료: 고용노동부 고시(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), 산업통상자원부 공고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) 및 행정안전부 고시(인구감소지역)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또한, 감면대상인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향후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현황 등 자료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2022년 310개로 연도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, 이들 기업의 위기지역 위치 여부 및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대한 자료가 부재

[표 4]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추이

	사업전환 승인		
		업종추가	업종전환
2014	49	46	3
2015	99	90	9
2016	169	163	6
2017	126	121	5
2018	107	102	5
2019	100	97	3
2020	226	217	9
2021	114	111	3
2022	310	305	5

자료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, 각 연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